



제417회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요 OTT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분담금 부과 등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63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주요 OTT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분담금<br>부과 등(안 제25조제5항 등) ..... | 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2.

다. 회 부 일 : 2024. 7. 1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조성·운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인력 양성 사업·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을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관한 지원 및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OTT(Over The Top)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직·간접적인 수혜자가 된다고 보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 집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실제로 EU와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요 OTT 사업자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 대하여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주요 OTT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분담금 부과 등(안 제25조제5항 등)

#####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 제24조<sup>1)</sup>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 재원(법 제25조)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을 추가하고,
- 기금의 용도(법 제26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sup>2)</sup>에 따른 보편적역무<sup>3)</sup>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br>1. 2. (생략)<br>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br>4. ~ 6. (생략)<br>② ~ ④ (생략)<br><u>&lt;신설&gt;</u> |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br>-----.<br>1. 2. (현행과 같음)<br>3. -----제5항-----<br>-----<br>4. ~ 6. (현행과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br>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 |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 3)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

| 현행                                                                                                                                                                                                                                                                                                                                                                                                      | 개정안                                                                                                                                                                                                                                                                                                                                                                                                                                                                |
|---------------------------------------------------------------------------------------------------------------------------------------------------------------------------------------------------------------------------------------------------------------------------------------------------------------------------------------------------------------------------------------------------------|--------------------------------------------------------------------------------------------------------------------------------------------------------------------------------------------------------------------------------------------------------------------------------------------------------------------------------------------------------------------------------------------------------------------------------------------------------------------|
| <p>⑤·⑥ (생략)</p> <p>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 <p>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 해당 부가통신사업에 따른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p>⑧ -----제5항-----<br/>-----<br/>-----<br/>-----<br/>-----<br/>-----<br/>-----.</p> <p>⑨ (현행 제8항과 같음)</p> <p>⑩ -----제9항-----<br/>-----<br/>-----.</p> <p>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항-----<br/>-----<br/>-----<br/>-----<br/>-----<br/>-----.</p> |

| 현행                                                                                                                | 개정안                                                        |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6항-----<br>-----<br>-----<br>-----<br>-----.       |
|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br>-----<br>-----.                    |
| 1. ~ 10.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신설>                                                                                                              | 10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 |
| 11. ~ 16. (생략)                                                                                                    | 11. ~ 16. (현행과 같음)                                         |
|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 의견

- 현행 법 제25조제1항<sup>4)</sup>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sup>5)</sup>

-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

까지에서 기금의 재원이 되는 분담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①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종편PP에 대한 방송광고 매출액 중 일부, ②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 대한 방송서비스 매출액 중 일부, ③홈쇼핑PP의 영업이익 일부가 분담금으로 징수되고 있음.

- 제25조제2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보도·종편PP)에 대해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5조제3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IPTV)에 대해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5조제4항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PP)에 대해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

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분담금에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의 일부를 추가하는 한편, 이로 인해 증가된 재원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매출액에 대한 분담금을 징  
수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과 한국방송협회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첫째,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  
해 수행되는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인력  
양성사업·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을 포  
함하여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관한 지원 및 소외계층의 방송  
통신 접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른 사업  
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EU나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도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방송통신 발전기금 조성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국방송협회는 OTT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시장에 대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기금 납부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유튜브 등 OTT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광고가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을 장악하는 등 미디어 시장 변화 및 경쟁상황 변화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sup>6)</sup>

- 반면 신유형 사업자인 글로벌 OTT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미디어로 급성장하였으나, 시장에 대한 공적책임과 역할은 전무한 상황으로, 법에서 명시한 ‘국내 미디어 시장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 납부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EU,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 글로벌 OTT 기업들의 수입의 일부에 대해 세금 등을 부과하도록 한 사례가 있음.<sup>7)</sup>

---

6) 한국방송협회는 2007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티빙 등 OTT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TV 방송 중심이던 국내 미디어 환경이 달라졌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서 미디어 필수매체로 스마트폰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OTT 서비스 이용률은 77.0%로 전년(72.0%) 대비 5%p 증가하는 등 더 이상 이용자들은 TV, 라디오 등 레거시 미디어를 필수 매체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7)

○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매출액에 대한 분담금을 징수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티빙·웨이브·(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음과 같은 반대 논거를 제시하고 있음.

○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방송통신 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의무 신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담금관리 기본법」<sup>8)</sup>에 따라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담금 부과 요건 규정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영역 확정 및 영역별 회계분리 가능 여부 등에

<한국방송협회가 제출한 해외사례>

[유럽연합]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을 마련하여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유럽의 작품 제작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직접투자와 국가기금 등에 대해 매출액에 기반하여 **재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함.

[프랑스] ‘영상물지원기금(FSA)’을 영화관입장세, 텔레비전서비스세, 비디오세로 통합관리하여 영화지원, 영상물지원, 신규서비스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영상물지원기금 중 비디오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2%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6년 유튜브와 같은 무료 OTT의 광고매출에 대해, 2018년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과 같은 유료 OTT에 대해 프랑스 내 매출액에 대해 비디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금적용 범위를 확대함.

[캐나다] 2023년 4월 27일 넷플릭스·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은 캐나다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일명 ‘온라인 스트리밍 법(the Online Streaming Act)’을 통과시킴. 이 법안은 Netflix 및 Spotify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및 TV 쇼와 같은 캐나다 미디어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1970년대부터 CRTC(캐나다 방송규제 기관)는 미국 콘텐츠의 지배력에 맞서기 위해 캐나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의무적으로 방송분의 일정 부분을 자국 콘텐츠로 채워야 하는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익의 최소 30%는 캐나다산 콘텐츠 제작에 사용해야 함. 그러나 스포티파이, 유튜브, 틱톡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은 해당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본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하게 됨. 따라서 이 법을 통해 이러한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한 것임.

- 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 및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전통 산업과 달리 쇼핑, OTT, 검색,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어 부과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 또한, 해외사업자(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등)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외사업자에 대해 분담금 부과가 어렵다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sup>9)</sup>,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 등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분담금 징수 대상 확대는 새로운 규제 또는 부담이 신설되는 측면이 있어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둘째,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상 분담금은 독점적 권한을 허가·승인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분담금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해외사업자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국내사업자 역차별 및 소비자 부담 전가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OTT 시장의 경우,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사업자들은 영업 적자 상태로, 기금 부담금 부과 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는 입장임.

때문에 신중 검토 입장이며, 그럼에도 부담금을 징수한다면, 영화가 방송통신사업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영화발전기금으로 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셋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티빙 등 이해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업자로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담금 납부자인 방송사업자 등과 그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 등에서 수용 곤란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담과 기금 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본질적 차이가 있어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용 곤란 입장임.
  - 티빙은 기금의 성격, 징수대상, 사용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OTT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무리한 징수대상 확대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사안으로 수용 곤란 입장임.
  - 웨이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납부 의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납부 대상 및 의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 곤란 입장임.
  -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등록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금의 분담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수용 곤란 입장임.

○ 넷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은 개정안이 헌법적 정당성, 형평성,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은 조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적절한 사용(사회적 취약계층 복지를 위한 부담금 징수는 타당하지 않음)에 해당되고,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부재하며, 콘텐츠 제작자, 배급업자는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담금의무사업자 선정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에 대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이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확대되는 만큼 이를 통해 보편적 역무에 대하여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을 지원하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은 보편적 복지인 만큼,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종합해보면,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매출액에 대한 분담금을 징수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직·간접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취지 및 분담금 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한국방송협회의 의견과 함께,
- 분담금 징수 대상 확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징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중 검토 의견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신중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이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확대되기 때문에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와 함께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중 검토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